

평가요약표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예술창작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1. 보조사업의 타당성	59.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7.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1.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0.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8.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2.0
2-5. 평가결과 이행여부	-2.0
2-6. 실집행 실적	-2.0

구분	총평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 사업방식 변경 - (감축) 내역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40억원)이 23~25년 동안 일정수준 감축이 필요함에 따라, '예술창작지원'(381.7억원)은 향후 3년간 일정수준의 감축이 필요함 - (사업방식변경) 세부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내역사업의 연간목표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설정하며, 보조사업자의 일정 비율의 자부담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등 효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집행률 부진/ 자부담비율 의무 유예/ 연간목표 설정 기준 미비 - 3년간 실집행률 77.1%, 특히 내역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20년 58.1%, '21년 50.9%)의 실집행률 저조함 -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10%) 의무 설정 유예 및 사유 불분명함 - 목표설정의 근거 미흡에 대한 지적('19년 보조사업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반한 노력이 미흡함 - 단기-중기-장기사업의 재정소요액 추계 근거 미약함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률이 미비한 내역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예산을 일부 감축하여 추진하고, 내역사업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은 조기 사업 집행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조사업자에 일정비율 자부담 비율 의무화를 사업집행 과정에 확대 실행함 ·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재 '건수'로 제시된 목표치 설정의 근거나 적절한 지표 설정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동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조사업의 목적, 재원, 용도, 재원관리의 주체 및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와 제16조에서 보조사업의 목적과 재원, 제3조와 제5조에서 예술창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나열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제3조, 제18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 동 사업의 목적이 기초예술 분야의 장르별 집중지원과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 내역사업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은 기초예술 분야의 장르별로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예술작품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초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내역사업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기초예술다양성 증진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예술교류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필요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이 적절함
 - 각 내역사업은 장르나 영역별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의 창작육성 및 국제교류, 기술 융합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내역사업별로 전체 사업과 연관성은 높다고 판단됨
 - 내역사업 중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은 장르적 특성보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보이므로, 다른 내역사업과 이질적 요소를 보임. ‘22년 예술인력육성사업으로 사업 이관됨
 - 각 내역사업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됨
-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의 연간 목표(계획과 실적)가 건수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나 기준, 그에 따른 예산배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내역사업별로 '22년 계획이 문학창작육성 70건, 시각예술창작육성 82건, 공연예술창작육성 675건, 국제예술교류지원 180건,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109건, 기초예술다양성 증진지원 86건으로 제시됨.
 - 특히 각 년도의 계획의 증가 또는 감소의 기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19년 보조사업평가에서도 ‘목표설정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매년 예산 규모와 전년도 지원금 평균단가 등의 사업환류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제출하였으나, 그 근거의 객관성이 아직 미흡함

내역사업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문학창작육성	62건	61건	75건	50건	70건
시각예술창작육성	371건	379건	49건	62건	82건
공연예술창작육성	1,618건	1,967건	1,527건	2,340건	675건
국제예술교류지원	248건	165건	179건	134건	180건
예술과기술융합지원	-	-	70건	79건	109건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	32건	64건	86건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22년 이관)	196명	222명	96명	106명	296명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해서는 공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음
 - 기초예술 분야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며 자생적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이 타당함
- 내역사업의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수행하는 문화교류사업과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대상이나 방식, 그리고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됨
 - 문화교류사업(한국국제교류재단) : 외국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해외 문화예술기관(단체)나 재외공관, 그리고 해외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관련 문화행사에만 지원이 가능함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예술단체의 창작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각국 문화예술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중장기적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등 예술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이나 간접적으로는 예술공연을 관람하는 국민이 될 수 있어 비교적 수혜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 부사업 '예술창작지원'의 '22년 예산은 38,171백만원으로 대규모사업에 해당함
 - 내역사업('22년 예산) : 문학창작육성(1,340백만원), 시각예술창작육성(2,410백만원), 공연예술창작육성(24,791백만원), 국제예술교류지원(4,000백만원),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3,750백만원), 기초예술다양성 증진지원(1,880백만원)
 - 사업기간 : 1974년부터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21년 신규 '예술과기술융합지원',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19년~'21년)
- 국고보조금의 지원율과 관련하여 민간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적용시 자부담 기준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자부담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함

- '19년 보조사업평가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율에 대해 '지원 금액을 단체의 재정수준 및 공연 수익금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서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부담 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그 조치결과로 제시한 '사업특성을 고려한 자부담기준 마련 및 2020년 공모사업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부족함
- 특히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 비율(10%) 의무를 설정하고 공모시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부담의 의무를 제외하는 사례가 있으며 그 사유가 분명하지 않음
- 세부사업의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의 기준이 동일하게 전년대비 10% 증액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 각 추계방법에 대해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각 내역사업도 대부분 전년대비 10% 증액하거나 일부 사업은 3% 증액(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과 기술융합지원)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수요에 기반'한다는 설명으로 객관성이 약함
- 보조사업 실적행률과 불용액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유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21년에도 실적행률이 77.5% 수준이고 불용액이 10억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지원사업이나 수혜자 선정 등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년과 '21년의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의 조기 집행과 실적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내역사업 중 '공연예술창작육성'의 실적행률은 '19년 68%, '20년 78.4%, '21년 75.5%로 낮으므로, 집행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있음
 - 내역사업 중 '국제예술교류지원'의 실적행률이 '20년과 '21년 각각 58.1%, 50.9%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파악되나, 이후 사업 집행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불용액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매년 사업연장에 따른 보조금 이월 집행액이 22%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의 다양화 등 보완이 필요함

1-5 사회적가치 실현(가감점)

① 사회적가치 실현 가점

- 가점

- 예술창작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술가의 기본권리로서 인권보호(표준계약서, 자녀돌봄비제도, 성희롱·성폭력 서약 및 교육 필수), 근로환경 유지(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미등록공연장 등록 지원), 노동권보장(심의기준에 4대보험 납부기록 확인), 사회적 약자 지원(장애인 접근권 지원), 지역경제 공헌(지역최소보장제 도입), 환경의 지속가능성(탄소중립 교육 및 평가지표 도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지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함

< 사회적 가치 직접적 기여 >

사회적 가치	직접적 기여 내용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지원 보조사업 수행 시 서면계약서(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로 예술계 공정 생태계 및 예술인 권리 보호에 기여 ▶ '21년 정시공모 자녀돌봄비 제도 도입을 통하여, 자녀 양육으로 인한 예술인 경력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 ▶ 보조사업 수행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 및 교육 이수 필수화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창작산실 보조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안전 사각지대의 미등록 공연장(23개소)의 등록 지원을 통하여 법령 위반 및 안전 사각지대 위험 해소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시, 심의 기준에 4대보험 납부 기록,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여부 등을 포함 ▶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인식 제고 및 가입 확대 기여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자막, 수어, 음성해설지원 등의 작품접근성, 이동 슬로프 설치 등의 시설 접근성 향상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규 도입 ▶ 자녀 양육으로 인한 예술인 경력단절 방지 및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을 위해 '21년 정시공모 자녀돌봄비 제도 신규 도입, '22년도에도 지속 유지
⑧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서울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자, '지역 최소 보장제' 도입 및 적용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사업 선정 71.9% 수도권 차지"(2019.9)) ▶ '21년 정시공모 창작분야 선정건수 총 618건 중 비수도권 216건(35%) 기록
⑩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보조사업자 대상 탄소중립 관련 교육 실시 및 평가지표 도입

정량적 증빙자료(과거 수치 비교 등 수치 활용)

- ▶ 예술창작지원 보조사업자 서면계약서 체결 100% 달성 (* 문체부 조사 결과, '18년 전업 예술인의 계약 체결 경험률 42%에 불과)
-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 확대 : '19년 1,311명(단체 대표자)→'20년 1,905명(보조사업 참여자 전원)→'21년 집계중
- ▶ 민간 소공연장 법정 등록 지원(23개소)
- ▶ 영유아돌봄비 '21년도 신규도입 및 '22년도 사업범위 확대 : '21년 53건(7.2%)→ '22년도 53건(7.34%) 지원신청
- ▶ 지역균형지원제 : '20년 31.8%→'21년 34.9%→'22년 35.6% 지역 소재단체 선정
- ▶ 배리어 프리 신규 도입 : '22년도 정시공모 1차 사업 도입결과, 선정단체 1,405건 중 37건 지원신청
- ▶ 탄소중립 공연예술제 개최 지원(순환경제 활성화, 페이퍼리스 등 147건)

② 사회적가치 실현 감점

○ 감점

- '20년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내역사업)에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횡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판결이 이루어지는 1개 건수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 법령 등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보조금 반환, 환수, 시정명령 등) 현황 >

연도	행정처분 권자	행정처분 대상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처분근거(법령 등)
19년 (예술창작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년 (예술창작지원)	-	-	-	-	-
(내역사업) 아르코 청년예술가지원	중앙관서의 장	이정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기소유예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23조 위반, 「형법」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
21년 (예술창작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보조사업자 대비 행정처분비율 >

연도	보조사업자 수(A)	법령 등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B)	법령 위반 비율(B/A)	행정처분 대상 보조사업자 수(C)
19년 (예술창작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년 (예술창작지원)	2,078	1	0.06%	1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224	1	0.4%	1
21년 (예술창작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제 규정 및 지침(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심의업무 공정 처리규정,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 지원심의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는 절차가 명확함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0조(보조사업자 수행상황 점검 등)에 근거함
 - 회계법인 상시점검 및 정산 검증을 통해 집행 점검
- 보조금 반환, 중요재산 관리, 정산 및 회계감사, 정보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7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제38조(검증기관의 책임), 제39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52조(정보공시), 제5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54조(재산처분의 제한), 제55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56조(신고 포상금 지급)에 근거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적절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30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제43조(보조사업점검단), 제51조(부정수급 점검), 제50조(부정수급 모니터링)에 근거함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함
 - 문예진흥기금의 부정수급점검계획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 환수, 제재, 제도개선 등으로 사후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처리절차를 가지고 있음

- 가이드라인 제작(부정징후 발견, 부정징후 조사, 부정수급 처리절차 등), 전문회계검증기관의 회계감사 시행,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에서 부정수급 방지 교육, 기관 누리집내 신고센터 안내 및 부정수급 제재사항 안내 등 체계적으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감점)

①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가점

○ 가점없음

- 부정수급에 대해 자체적발 실적이 1건이며 외부적발 실적은 없음

< 자체 사업관리 노력 >

주요 개선노력	~2019년	2020~2021년	2022년~	개선효과 (기대효과)
보조사업자 선정	·「문화예술진흥법」, 「보조금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 준수하여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보조금법」, 「보조금운영관리규정」,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공모 및 선정 ·지원심의 가이드 라인 5종 및 각종 양식 15건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 ·심의방식 다각화 블라인드, 실연심의, 심의참관제 등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자가 체크리스트 도입 (부정수급, 미정산, 임금체불 등 확인) ·공모사업 지원신청 결과 공개(사업별 신청 현황 등) ·중복선정 제한사항 반영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집행 및 사후관리	·사업별 매뉴얼 집행 지침 운영 ·사업별 모니터링 구축	·(집행)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 배포, 사업별 매뉴얼 제작 ·(사후관리)사업별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	·(집행)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및 정산기준 교육 시행, 월집행점검 강화 등 집행행위 관리 ·(사후관리)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데이터 수집, 사업 평가 결과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시행	·연간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사업 성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사업 개선 도출
부정수급 관리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징후 모니터링 점검	·사업별 현장 평가모니터링 실시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의심내역 상시 관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오리엔테이션 진행 (부정수급 제재사항 안내 및 신고센터 안내) ·회계법인 등을 통한 상시점검(상,하반기)으로 부정징후 사전예방	·부정수급 관련 안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한 부조리 사전 차단 ·부정징후 의심 단체에 대한 사전 포착 및 대응 용이

< 부정수급 적발노력 >

연도	구분	이력	적발기관	내용	조치결과
2019년	자체적발	0건	-	-	-
	외부적발	0건	-	-	-
	전체	0건	-	-	-
2020년	자체적발	1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 검찰 판결 부정수급액 확정 ○ 부정수급액 반납 요청
	외부적발	0건	-	-	-
	전체	1건	-	-	-
2021년	자체적발	0건	-	-	-
	외부적발	0건	-	-	-
	전체	0건	-	-	-

②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감점

○ 감점

- 2019년 19건의 부정징후 통보내역에 대해서 20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조치하였으나, 1건이 점검기한(45일 이내)을 준수하지 못함
- 2020년 20건의 부정징후 통보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조치하였으며, 부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21년 28건의 부정징후 통보내역에 대해서 26건은 정상적으로 조치하였으며 부정이 없었으나, 2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과오수급 처리 진행중(46,818원)이거나 추가조사가 진행중(13,200,000원)임

< 표 1 >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내역(2019~2021년)

사업	연도	통보건수	점검여부		점검기한 미준수	시스템 미등록	부정확인 건수
예술창작지원	2019	보조사업자 가족간거래 등 21건	점검O	21건	1건	0건	0건
			점검X	0건	0건	0건	0건
	2020	보조사업 가족 거래 등 20건	점검O	20건	0건	0건	0건
			점검X	0건	0건	0건	0건
	2021	보조사업 가족 거래 등 28건	점검O	28건	0건	0건	2건
			점검X	0건	0건	0건	0건
	총계	보조사업자 가족간거래 등 69건	X		1건	0건	2건

< 표 2 > 부정확인 내용(2019~2021년)

(단위: 원)

사업	연도	통보내용	통보일자	점검 및 부정확인 일자	부정확인 금액	조치내용
예술창작지원	2019	해당사항없음				
	2020	해당사항없음				
	2021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2021.10.01	2021.11.17	46,818	과오수급 처리 진행중
		보조사업 가족 거래(대표자)	2021.10.01	2021.11.16	13,200,000	추가조사 진행중

2-5 과거 평가결과 이행 여부(감점)

○ 감점

- 예산감액, 성과관리 지표 설정, 사업효과성 진단 등의 결과에 대해 일부를 반영한 실적은 있으나, 자부담 기준과 예산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실적은 미흡함

< 과거 평가 결과 이행 여부 >

2019년 평가결과	반영여부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감축 · 주요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의 액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 설정 근거 및 목표설정이 미흡하여 사업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금액 산정근거가 미흡하며 예산의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 규모를 재설정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의무를 명시하였으나 그 규모에 대한 근거가 적어 자부담 금액의 편차가 크므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불용액 및 부정수급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감액) '22년도 정부안 관행적 보조사업 감액 편성(△1,078백만원) · (성과지표 관리) 부서별 자체 계량지표를 설정하고 지속 관리하여 사업 효과성 진단(pp.16-17 참조) · (자부담 기준 개선) 사업 특성을 고려한 자부담 기준 마련 및 2020년 공모사업 적용(국가의 직접사무를 위탁하는 성격의 사업, 청년 대상 사업 등 자부담 제외) · (예산 불용 개선) 예비 후보자 지원제도 도입으로 불용액 최소화 · (부정수급 관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부정수급 제재사항 등 교육을 통해 부조리 사전 차단

2-6 과거 3개년 실집행 실적

- 3년 가중평균 실집행률 실적은 77.1%이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보완 방안이 필요함
- '19년은 내역사역별로 사업포기나 부정수급 지원결정취소 등, '20년과 '21년은 코로나로 인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 그 외에 해당년도내 행사를 개최하고 차기연도 상반기 내 사후집행 및 정산완료하는 예술현장의 특성을 사유로 제시한 점에 대해 사업기간 내 집행률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제안됨

< 실적집행 실적>

구분	3년 가중평균 실적집행률 (A×20%+B×30%+C×50%)	2019년 (A)	2020년 (B)	2021년 (C)
실집행률	77.1%	75.0%	77.8%	77.5%
실집행 부진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은 내역사업별로 사업포기, 타보조사업 부정수급단체 지원결정취소 등 · '20년과 '21년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포기, 행사 축소 및 취소 등 · 해당년도 내 행사 개최 및 차기연도 상반기 내 사후집행 및 정산 완료하는 예술현장의 특성에 의함 			

3. 종합 평가 및 제언

-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의 목적에 근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함
- 보조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 집행과 수행절차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함.
 - 내역사업의 연간목표 설정 근거가 미흡하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10%) 의무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부담의 의무를 제외하는 사례가 있으며 그 사유가 분명하지 않음. 세부사업의 단기-중기-장기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액 추계기준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도 제시되어야 함
 - 이에 각 내역사업별로 연간 목표 설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자부담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재정소요액의 중장기 추계를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함
- 사업의 실적행률이 저조하며, 코로나19의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예산 실적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미흡함
 - 3년 계속 실적행률이 80% 미만으로 나타나며 '21년에 불용액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예산집행절차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내역사업 '공연예술창작육성'은 조기 집행을 위한 관리 조치가 필요하며, 내역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은 이후 사업 집행 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회계년도 내 사업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불용액에 대한 사후조치가 강력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